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750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6월 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2021년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급식경비 신청 방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급식경비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급식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원신청에 관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 (안 제6조)
- 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다.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3조, 제4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
 - 「유아교육법」 제7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4.29~2022. 5.19)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교급식법」”을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가목 중 “품질인증”을 “우수관리인증”으로, “수산물”을 “품질인증 수산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수산물”로,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인증품”을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을 “학교급식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학교급식법」”을 “법”이라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교 및 시설의 장”을 “학교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위임”을 “위탁”으로, 같은 조 같은 항제4호 중 “위임받은”을 “위탁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급식지원사업”을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를 “시범학교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를 “급식경비”로, “규칙으로”를 “구청장이 따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직접 또는 관할 교

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원신청에 관하여 합의된 별도의 방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적학생수”를 “재학생수”로,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필요한”을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하여”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 “규칙으로”를 “구청장이 따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를 “지원대상자는 급식 경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 사용내역을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집계하여 양천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사용내역 제출에 관하여 합의된 별도의 방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내역
2.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

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2. 교장 및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1명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4.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2명
5. 시민 단체 추천 2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3을 제10조로 이동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직무태만, 장기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천구의 학교급식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의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를 제14조로 이동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을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5조로 이동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를 제16조로 이동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인하여야 한다”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을 “지원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학교급식지원의 현황을 구”를 “학교급식 지원현황을 양천구”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u>학교급식법</u>」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u>유아교육법</u>」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2. (생 략)</p> <p>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농수산물 품질관리법</u>」에 따른 <u>품질인증 농산물</u> 및 <u>수산물(원양산 포함)</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u>친환경농산물</u></p>	<p>제2조(정의) ----- -----.</p> <p>1. ----- ----- 「<u>학교급식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 ----- -----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 <u>우수관리인증</u> ----- <u>품질인증 수산물</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친환경농수산물</u></p>

현행	개정안
<p>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p> <p>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p> <p>마. (생략)</p>	<p>다. ----- 「<u>축산물 위생관리법</u>」----- ----- ----- -----</p> <p>라. ----- ----- <u>인증을 받은 식품</u></p> <p>마. (현행과 같음)</p>
<p>4. (생략)</p> <p>제3조(급식경비 지원) 양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p> <p>1. <u>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u></p> <p>2. <u>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u></p> <p>3. <u>구청장은 저소득층 자녀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4. <u>구청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생략) 3. 그 밖에 <u>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u> 	<p>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 (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 --- 2. (현행과 같음) 3. ----- <u>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p>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 제2조에 따른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 	<p>제5조(지원방법) ① ----- ----- <u>학교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u>----- ----- -----.</p> <p>②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현행	개정안
<p>를 위임할 수 있다.</p> <p>4. 제3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u></p> <p>④ <u>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u>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직접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u></p>	<p>--- <u>위탁</u>-----.</p> <p>4. -----</p> <p>----- <u>위탁받은</u> -----</p> <p>-----</p> <p>-----</p> <p>-----</p> <p>③-----</p> <p><u>학교급식 지원사업</u>-----</p> <p>----- <u>시범학교를</u> -----</p> <p>-----.</p> <p>④ <u>급식경비</u> -----</p> <p>-----</p> <p>-----</p> <p>-----</p> <p>----- <u>구청장이 따로</u> -----.</p> <p>제6조(지원신청) ① -----</p> <p>-----</p> <p>-----</p> <p>----- <u>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원신청에 관하여 합의된 별도의 방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1. ~ 2. (생략)</p> <p>3. 해당 학교 <u>재적학생수</u> 및 급식 대상 학생수</p> <p>4. ~ 5. (생략)</p> <p>6. 그 밖에 <u>필요한</u> 사항</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u>종합하여</u>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u> 정한다.</p> <p>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 초·중학교는 직접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구</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재학생수</u> -----</p> <p>-----</p> <p>4. ~ 5. (현행과 같음)</p> <p>6. ----- <u>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u> -----</p> <p>-----</p> <p>② ----- ----- <u>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u> ----- -----.</p> <p>③ ----- ----- <u>구청장이 따로</u> -----.</p> <p>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급식경비 지원 ----- ----- ----- ----- ----- -----.</p> <p>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u>급식경비 사용내역을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집계하여 양천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u></p>

현행	개정안
<p>청장은 이를 집계하여 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청 등 관계기관과 사용내역 제출에 관하여 합의된 별도의 방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부구청장, 구 업무소관 국장 2. 위촉직:교육지원청 업무소관 부서장, 교장 및 영양교사 1명, 양천구의회 의원 2명, 초·중·고 학부모 대표 2명, 시민 단체 추천인 2 	<p>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내역 2.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현행	개정안
<p>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양천구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p>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의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p> <p>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2. 교장 및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1명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4.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2명 5. 시민 단체 추천 2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p>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p>

현행	개정안
<p>2.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p> <p>3.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p> <p>4.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p>	<p>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p> <p>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p> <p>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p>	<p>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p> <p>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p> <p>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p>

현행	개정안
<p data-bbox="188 1469 347 1509"><신설></p>	<p data-bbox="836 264 1082 304"><u>인이었던 경우</u></p> <p data-bbox="820 331 1394 506">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 data-bbox="820 533 1394 1106">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 data-bbox="820 1133 1394 1375">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 data-bbox="788 1469 1394 1711">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ol data-bbox="820 1738 1394 2107"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현행	개정안
<p data-bbox="188 869 347 913"><신설></p> <p data-bbox="188 1608 347 1653"><신설></p>	<p data-bbox="836 264 916 309">경우</p> <p data-bbox="820 331 1394 577">4. 직무태만, 장기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 data-bbox="820 600 1394 779">5.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p> <p data-bbox="788 869 1394 1048">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 data-bbox="820 1070 1394 151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 data-bbox="788 1608 1394 1787">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 data-bbox="820 1809 1394 2107">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현행	개정안
<p><u>제8조의2(수당)</u>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u>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가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도매 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p>	<p>③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천구의 학교급식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u></p> <p>④ <u>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의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u></p> <p>⑤ <u>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14조(수당)</u> ----- ----- ----- ---- <u>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u> -----.</p> <p><u>제15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u> 구청장은 <u>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에 대하여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정확히 집행되었는지를 <u>확인하여야 한다.</u></p> <p>② 지원대상자가 <u>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u></p> <p>③ <u>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 및 이 행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도·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u></p> <p>④ <u>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u></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6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 ----- ----- --- <u>지도·감독할 수 있다.</u></p> <p>② ----- <u>지원금을</u> ----- ----- ----- ----- -----.</p> <p>③ <u>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u></p> <p>④ ----- <u>학교급식 지원현황을 양천구</u> ----- -----.</p> <p><u><삭 제></u></p>

【관계 법령】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가. (생략)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 2) (생략)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 ~ 5) (생략)

다. ~ 마. (생략)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2) (생 략)

나. (생 략)

3. 수산물

가. (생 략)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 라. (생 략)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 8) (생 략)

나. ~ 라. (생 략)

5. (생 략)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 2750 호
----------	----------

제안연월일 : 2022년 6월17일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2022년.6.3.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6.3. 당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5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를 현행 조례 제10조 조문과 같이 서울특별시 등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5조의 조문을 현행 조례 제10조의 조문으로 변경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도매 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도매 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p>	<p>제15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15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도매 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p>